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1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3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제37조의4) ① ~ ⑦ (생략) <u><신설></u> <u><신설></u>	☐ 특수관계자의 기한 내 자료 미제출 후 불복신청 시 자료 제출의 경우 해당 자료 미이용 가능 ① ~ ⑦ (현행과 같음) ○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자료에 대한 미이용 가능(제8항 신설)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 이행강제금(제266조의3 신설) ○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및 과태료 중복부과 금지(제1항) ○ 이행강제금 부과 전 30일 이상 장부등 제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 부여 및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결정: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수입신고 금액의 1천분의 3(평균 수입신고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 500만원)의 범위(제3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감경·면제: 장부등 제출의무 이행 노력 등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신 설>	처 결정(제4항) ○ 이행강제금 관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제5항)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266조의 4 신설) ○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부세관에 심의위원회 설치(제1항)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제2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하위법령 위임 등(제3항 및 제4항)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제2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관세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
--------------------	--

* 박민규의원안 2026. 3. 27. 발의(의안번호 17811)

□ 현행법은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로 하여금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¹⁾ 세관장이 세액심사시 등에 특수관계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의무자가 수

1) 「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입신고 전 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도록 하고,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함²⁾. 또한,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수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에 심사(세액심사)함³⁾.

한편, 세관장은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수입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⁵⁾

-
- 2)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4)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5) 「관세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①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요구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②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가 불복신청 시에 제출하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증거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우선,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미제출한 특수관계자가 불복신청에 제출하는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관련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음.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제37조의4) 관련]

구 분	상 세
목 적	◦ 본사와 자회사 관계 등 특수관계자 간 수출입은 거래가격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 ◦ 가격결정자료등에 대한 제출요구 규정을 통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
제출기한	◦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요구 시 60일 이내에 자료 제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 가능)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 (과태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77조제1항) ◦ (과세가격 결정) 동종·동질물품(제31조) 또는 유사물품(제32조)의 거래가격 등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가능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제출요구 등	◦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경우 재차 미제출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자료의 시정 제출 요구 가능 ◦ 제출기한은 30일 이내 ◦ 기한 내 제출 요구 불응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77조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제16조에서는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 등의 경우

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이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⁶⁾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법」의 목적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을 통해 국가 간의 조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⁷⁾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등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7) 정상가격: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 「국제조세조정법」 제16조제6항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한 자료를 불복신청에서 제출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목적은, 일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당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과세당국이 추계에 가까운 방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을 하게 되면 세무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을 파기하도록 하거나 감액 결정을 받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임.⁸⁾
- 개정안은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조정법」상 불복신청 시 제출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수출입 거래에서 왜곡될 수 있는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임.
- 재정경제부는 불복신청 시 제출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부동의함. 다만, 1995년 「국제조세조정법」 제정 당시부터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8)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2024, p. 449. / 박주철·이미현·이희경,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성실도 제고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12., p.19.

관세는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상당 부분을 수입자가 보유하거나 확보할 수밖에 없어 자료제출의무의 이행 확보가 과세의 적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복신청 시점까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 불복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미이용은 일률적인 배제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등 절차적 의무 지연에 대해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자료제출 요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기한 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음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미이행 시 현행 과태료 부과 외 이행강제금 도입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된바 있고 이에 대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상 이행강제금 도입 개정안 제안이유]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3)

□ 개정안의 이행강제금 도입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과 동일한 취지 및 입법례9)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1회성 과태료10) 외에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방법 또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과태료는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한 사후적 금전벌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동일 사실에 대한 반복 부과도 허용되지 않는 반면,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고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의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의무 이행 강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임.

9)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관세법」 제266조제1항) 세관공무원의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규정 → (동법 제277조제3항제4호)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 세관장의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요구 규정 → (동법 제277조제1항)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후 이행강제를 위한 반복 부과 가능성으로 의무이행자에게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클 수 있는바, 부과 가능한 이행강제금의 총액 상한 마련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¹⁾
- 또한, 자료 제출 거부를 악용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적용될 경우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 다른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다국적기업에 한정된 제재 적용 시 국제규범 위반 문제, 기업 규모에 차등한 제재 적용 시 무차별원칙 위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 재정경제부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내 기업 전반의 관세조사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횡수의 상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12) 박주철·이미현·이희경, 앞의 자료, p.76.

문 의 처
02)6788-5158